

영등포구의회
제170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2. 9.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基 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46호로 2012년 8월 30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9월 0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도서관법」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및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에 따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지원하여 관내 사회적 배려대상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서관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안 제17조제3항에 관내 거주중인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하여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50% 이내에서 감면할 수 있도록 함.

나. 안 제17조제4항에 다등이 행복카드 소지 가족에게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30% 이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함.

다.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정비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도서관법」 제44조

-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

5. 검토의견

○ 이 일부개정 조례안은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9조에 따라 설치 운영 되는 우리구 정보문화도서관의 이용자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한하여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50% 이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제출된 조례안 임.

○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7조제3항을 신설하여 국민기초수급권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의사상자, 경로우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

가족에게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50% 이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 안 제17조제4항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가족에게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의 30% 이내에서 감면 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신설하였고
- 그 밖에 부분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함.

○ 이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서관법」과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기 위한 각 개별법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하여 도서관 문화강좌 수강료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검토결과 상위법 저촉이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서관 명칭 및 위치

명 칭	위 치	비 고
대림정보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동 608-2	
선유정보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3가 88-1	
문래정보문화도서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76-5,8	

□ 도서관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1.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기준	금 액	비 고
다목적 홀	1회 3시간	3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기준 초과시 시간당 사용료의 10% 가산 적용 ○ 사용가능시간대 : 09:00~18:00

2. 수 수 료

구 분	규 격	금 액	비 고
전자복사 및 프린터 인쇄	B5	30원	1면당 금액적용
	A4		
	B4	50원	
	A3		
회원증 발급	1매당	1,000원	신규 · 재발급

3. 수 강 료

구 분	금 액	비 고
문화강좌	월 5만원 이하	

제27조(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28조(업무) 공공도서관은 정보 및 문화, 교육센터로서 수행하여야 할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3.25>

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공중에 이용 제공
2. 공중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및 지방행정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 관련 행사의 주최 또는 장려
5.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
6.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육성
7.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도서관의 설립·운영 및 도서관자료수집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는 등 공립 공공도서관의 균형 있는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②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에서 그 운영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시설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 및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서관이 도서관자료, 시설, 정보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을 구비하는데 필요한 재정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보상금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2 도서관법 시행령

제21조(지식정보 취약계층 등) 법 제4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식정보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

한다. <개정 2009.9.21, 2011.1.17>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65세 이상의 노인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감면대상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0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장애인등록증을 이용하려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고궁 등의 이용지원)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고궁 등의 이용지원) ① 법 제15조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의상자.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 보조자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 보조자 중 1명을 포함한다.

2. 의사자유족 중 법 제10조에 따른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3.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이나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때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을 해당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활동 보조자의 경우에는 의상자의 의상자증 제시로 이를 갈음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은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12.2.1]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요금 감면율

시설의 종류	요금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 고궁 및 능원	100분의 100
2. 국공립 공원	100분의 100
3. 독립기념관	100분의 100
4. 전쟁기념관(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100
5.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대관전시는 제외한다)	100분의 100

6. 국공립 수목원	100분의 100
7. 국공립 자연휴양림	100분의 100
8.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은 제외한다)	100분의 50
9. 국공립 공공체육시설	100분의 50

6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농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